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795
----------	------

제출일자 : 2020. 5. 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운송사업자의 편의 제공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달성군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공영차고지 이용허가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허가여부를 결정하되, 화물자동차의 등록지 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지가 달성군인 경우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공영차고지의 이용료 규정(안 제5조)

이용자는 신청서(일별·시간별 제외) 제출과 동시에 이용요금표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라. 공영차고지의 이용자 의무 규정(안 제7조)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한 규정

마. 공영차고지의 위탁 근거 규정(안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5조(※ 붙임)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

다. 기타

(1) 1차 입법예고(2025. 12. 30. ~ 2026. 1. 19.) 결과 : 의견없음

재입법예고(2026. 2. 5. ~ 2026. 2. 20.) 결과 : 의견없음

- 재입법사유 : 비용추계서 첨부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의 제공 및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데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공영차고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화원읍 설화리 809, 군 옥포읍 간경리 253-1 등 일원에 둔다.

제4조(이용허가 신청) ① 공영차고지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할 때도 같다. 다만,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의 등록지가 군인 경우
2.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군인 경우
- ③ 월 단위의 공영차고지 이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중단 (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허가신청 취소 등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군수가 정하는 시기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용허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군수는 별표에 따른 월 단위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허가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등) ① 이용자가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공영차고지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단위의 일부를 이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월 단위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중단 또는 중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 : 면제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에 주차하는 경우 : 면제
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그곳에서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허가 취소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제8조(관리·운영사무 위탁)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2.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

운수와 관련된 법인

3.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4.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재정부담능력, 협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관리·운영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사용료 등) 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 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편성 그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고, 공영차고지 운영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군 수입으로 편성한다.

제11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화물자동차							
적용기준	1.4톤 미만	3.5톤 미만	5톤 미만	8톤	11톤	25톤	추레라
2시간 이내	1,000	1,000	1,000	2,000	2,000	2,000	5,000
6시간 이내	2,000	2,000	2,000	3,000	3,000	3,000	7,000
12시간 이내	2,000	3,000	3,000	5,000	5,000	5,000	9,000
추가 12시간 마다	2,000	2,000	2,000	2,000	2,000	3,000	5,000
1일	5,000	6,000	6,000	7,000	7,000	8,000	14,000
1개월	32,000	42,000	53,000	63,000	73,000	91,000	115,000
승용차							
4시간	추가 1시간		1일		1개월		
1,000	500		5,000		27,000		

비고

1. 화물자동차의 차량구분은 자동차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간 단위 및 일 단위 주차시간은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시각부터 기산한다.
3. 위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별지 제1호서식]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차량현황	차량번호		최대적재량
	차 종		세부용도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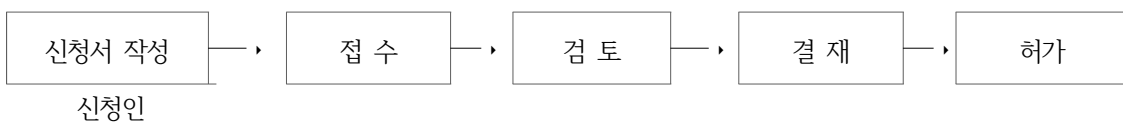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처리 절차



[별지 제2호서식]

달성군 제 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허가 증명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 여)
- 주 소 :
- 차량번호 :
- 이용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상기 차량에 대한 차고지 이용허가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인]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허가신청 취소 등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환불 계좌 (예금주)								
차량 현황	차량번호	이용 허가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실제 이용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이용허가신청 취소 등 (이용료 반환) 청구 내역	이용료 납부액	정산액		환 불 청구액					
	이용허가신청 취소 등 사유 (이용료 반환)								
<p>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자동차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div> <p>「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신청 취소 등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달성군수 귀하</p>									

관 계 법 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군수·광역군수·특별자치군수·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군수·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 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 설치자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차고지 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 설치자의 설치·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⑥ 차고지 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변경이 학생의 통학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달성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송 환경 조성 및 도심내 불법주차 해소

2. 재정수반 요인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3. 관련조문

- 안 제5조(이용료), 안 제8조(관리 및 운영사무 위탁), 안 제9조(관리 및 운영지원), 안 제10조(위탁사용료 등)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건비(일반직 3명, 공무원 2명), 운영비(경상경비 및 공공요금) 자산취득비(운영 첫해 집기구입)에 대해 향후 5년간 추계
 - 연도별 상승률은 평균 물가상승률 적용(인건비:1.9%, 운영비:3.1%)
 - 운영비 중 운영첫해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연도부터 제외하고 추계

나. 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계
합계	505	394	403	414	422	2,138
인 건 비	272	277	282	288	293	1,412
운 영 비	118	117	121	126	129	611
자산취득비	115					11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계
합계	505	394	403	414	422	2,138
군비	137	26	35	46	54	298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368	368	368	368	368	1,84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인건비(5명) : 연 272백만 원
 - 기본급 222백만 원, 제수당 등 기타 50백만 원
 - ※ 2025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및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적용
- 운영비 : 연 118백만 원
 - 경상경비 81백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37백만 원
- 이용료 수입 : 연 368백만 원
 - 인접 지역(경상권), 유사 운영방식 시설 이용요금 검토하여
 月이용료 산정
 - ※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반영

6.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작성자

소속 및 직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행정과장	성명(연락처)	임정근 (053-668-3010)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368,000	368,000	368,000	368,000	368,000	1,840,000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368,000	368,000	368,000	368,000	368,000	1,840,000
세 출	505,000	394,530	403,180	413,930	421,810	2,138,450
인 건 비	272,000	277,000	282,000	288,000	293,000	1,412,000
운 영 비	118,000	117,530	121,180	125,930	128,810	611,450
자산취득비	115,000					115,000
재원 조달	505,000	394,530	403,180	413,930	421,810	2,138,450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 체 수 입	소 계	505,000	394,530	403,180	413,930	2,138,450
	지방세 (군비)	137,000	26,530	35,180	45,930	298,450
	세외수입	368,000	368,000	368,000	368,000	1,840,00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군비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등)						